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507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6053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507856 판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곽민섭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변론 종결 2019. 5. 30.

판결 선고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1. 21. 접수 제13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차남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1. 피고 앞으로 2015.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집에서 C,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가 원고를 잘 부양하고 제사도 잘 지내는 것을 상대방담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6월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2017년 9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등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약속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당사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지만, 증여에 상대방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와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여계약서에 상대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고, 원고는 2015. 1. 28. "이 사건 증여를 하게 된 이유는 피고가 C와 혼인한 후 현재까지 원고와 함께 생활하여 수발을 하고 부양하면서 열심히 가정을 꾸려 왔기에 원고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증여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

○ 피고와 C, 원고 사이에 C가 피고의 조카 E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와 C를 화해시키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도 원만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고상영

별지